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나8058 집행판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가단11605 판결
변 론 종 결	2007. 6. 21.
판 결 선 고	2007. 7.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국 중재판정부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데이빗 패링톤(David Farrington)이 2004. 8. 12.에 판정한 별지 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 및 제1·2차 각 용선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인도의 할디아(Haldia)항에서 중국의 리안윤강(Lianyungang)항까지 철광석 22,966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고, 2001. 12. 1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란 에쉬라기(Iran Eshraghi)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측 용선중개인인 브리스크 마린 서비시스(Brisk Marine Services, 이하 '브리스크'라 한다)는 2001. 12. 15.경 인도 뭄바이에 있는 피고의 대리인인 마헨드라 레디(Mahendra Reddy, 이하 '마헨드라'라 한다)에게 용선계약서 2부를 제공하면서 이에 피고가 서명한 후 원고에게 송부하여 원고가 이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헨드라는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각 용선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다시 브리스크에 송부하였는데, 당시 마헨드라가 서명한 용선계약서(이하 '제1차 용선계약서'라 한다) 제9조에는 입항기간(Expected ready to load)이 2001. 12. 25.부터 2002. 1. 5.까지인 것으로, 제36조에는 '홍콩(HONGKONG)'에서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3) 이후 브리스크는 제1차 용선계약서를 원고측 용선중개인인 빌헬름 한센 주식회사(Wilhelm A. N. Hansen & Co. Ltd., 이하 '빌한센'이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제1차 용선계약서 제9조의 입항기간을 2002. 1. 1.부터 1. 10.까지인 것으로 고치고, 제36조의 '홍콩(HONGKONG)'을 '런던(LONDON)'으로 고치는 등 제1차 용선계약서의 여러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제2차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원고에 의하여 수정된 용선계약서를 '제2차 용선계약서'라 한다).

(4) 한편 브리스크는 2001.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의 입항기간을 2001. 1. 1.부터 2001. 1. 10.까지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홍콩'을 중재지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빌한센이 2001. 12. 26. 원고에게 보낸 '계약내용확인서(Fixture Confirmation)'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용선계약의 이행과 이 사건 중재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철광석 22,966톤을 선적하고 2002. 1. 7. 선적항인 인도의 할디아(Haldia)항을 출발하여 2002. 1. 20. 양하항인 중국의 리안윤강(Lianyungang)항에 도착한 후 피고에게 양하 준비완료통지를 하였다.

(2) 그러나 원고에게 용선료가 정상적으로 송금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용선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화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역작업이 지체되어 결국 2002. 2. 1.에서야 하역이 완료되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하역작업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화 55,583.33달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영국 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영국 1996년 중재법(THE ARBITRATION ACT 199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단독중재인으로 선정된 중재인 데이빗 패링톤(David Farrington)은 2004. 8. 12. 원고의 중재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기재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대한민국은 1973. 2. 8. ①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② 내국 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영국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 요건

(1)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은 '각 체약국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합

의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에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합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a)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b)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면서 뉴욕협약 제4조 제1항 (b)에서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재합의의 원본 및 이에 대한 외교관에 의하여 인증된 번역문으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제2차 용선계약서 원본 및 그 번역문(갑 2호증의 1, 2)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차 용선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2차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제2차 용선계약서가 원고와 피고의 최종적인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계약서 원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측 용선중개인인 브리스크가 2001. 12. 15.경 피고의 대리인인 마헨드라에게 용선계약서 2부를 제공하면서 이에 피고가 서명한 후 원고에게 송부하여 원고가 이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헨드라는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각 용선계약서에 서명한 후(제1차 용선계약서) 이를 다시 브리스크에

송부한 사실, 이후 브리스크는 위 용선계약서를 원고측 용선중개인인 빌한센을 통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용선계약서 제9조의 입항기간을 2002. 1. 1.부터 1. 10.까지인 것으로 고치고, 제36조의 '홍콩(HONGKONG)'을 '런던(LONDON)'으로 고치는 등 위 용선계약서의 여러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이에 서명한 사실(제2차 용선계약서), 빌한센이 2001. 12. 26. 원고에게 보낸 '계약내용확인서(Fixture Confirmation)'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차 용선계약서(갑 2호증의 1), 계약내용확인서(Fixture Confirmation, 갑 3호증), 제1차 용선계약서(을 1호증), 2001. 12. 20.자 이메일 서신(을 10호증)의 각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브리스크가 작성한 제1차 용선계약서는 2001. 12. 20.자 이메일 서신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원고가 제1차 용선계약서 중 수정한 부분은 계약내용확인서(Fixture Confirmation)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2차 용선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적인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계약서 원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차 용선계약서(갑 2호증의 1), 계약내용확인서(Fixture Confirmation, 갑 3호증), 제1차 용선계약서(을 1호증), 2001. 12. 20.자 이메일 서신(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브리스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합의한 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1차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계약 진행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변경되자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제1차 용선계약서를 수정한 제2차 용선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원고가 제1차 용선계약서를 수정한 제2차 용선계약서를 피고 또는 브리스크에게 송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 또는 브리스크에게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와 브리스크 사이에도 계약내용확인서(Fixture Confirmation)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교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위 계약내용확인서에 'CHRS HEREBY CONFIRM BELOW RECAP IN ORDER AND PLS ASK OWRS TO TENDER ETA NOTICES AS PER C/P'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빌한센은 용선자인 피고측이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원고에게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가 제2차 용선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용선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적인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계약서 원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중재합의의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원고가 갑 3호증을 중재합의의 원본으로 제출하고 있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 갑 3호증은 원고의 용선중개인인 빌한센이 원고에게 보낸 문서로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합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면서 뉴욕협약 제4조 제1항 (b)에서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건수 _____

판사 오규성 _____

판사 장윤미 _____

<별지>

중 재 판 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5,583.3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2.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25%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영국화 1,250파운드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6.25%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끝.